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382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5. 4.(수)
정책복지 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장선배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7일

-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장선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개정('15. 2. 3)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며,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위원 중 기존 ‘소관 상임위원회 위원’을 ‘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’로 개정하고,

- 그 밖에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, 문구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함.

나. 주요내용

-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변경을 통한 위원회 위상 제고 (안 제10조 제1, 2항)
 - 위원장 : 여성정책관 → 행정부지사
 - 당연직 위원 : 예산담당관 등 → 기획관리실장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 (안 제10조 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동 조례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음.
- 성별영향분석평가제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고, 정부합동평가(정성지표)에도 반영되고 있지만, 아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·국의 관심도는 낮은 상태임.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·국 관심도를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,
 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시키고,

- 당연직 위원을
과장급(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, 여성발전센터 팀장)
에서 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으로 변경하였음.
 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
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고,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해
당 실·국에 권고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,
동 개정조례안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·국 관심도 제고 및 활성화
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.
 - 또한, 이미 타 시·도의 경우 대부분 위원장을 단체장 및 부단체장
이 역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.
- 또한, 현행 조례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
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, 이는 「지방의회의원 행
동강령」(대통령령) 제7조에 위배된다고 보여 지는 바, 이를 “당연
직”에서 “위촉직”으로 변경하고, “소관 상임위원회 의원”을
“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변경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9조제2항의 개정예에 따라
“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
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는 임의적 규정을 강제
규정인 “~ 반영하여야 한다”로 변경하였음.
- ※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② 국가와 **지방자치단
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
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**
-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
정착과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며,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
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강구하여야” 를 “마련하여야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” 를 “반영하여야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분석평가책임관이” 를 “행정부지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, 성별영향평가센터장,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” 을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” 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
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<u>강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마련하여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분석평가 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5조(분석평가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7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<u>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7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반영하여야</u> -----.</p>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분석평가책임관</u>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행정부지사가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<u>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, 성별영향평가센터장, 충청북도회의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, ⑤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<u>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③ ----- <u>기획관 리실장, 여성정책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</u></p> <p>④,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14조(분석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유형 및 육성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4조(분석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
제7조(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)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·심의회·협의회 등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1.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
2. 본인,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